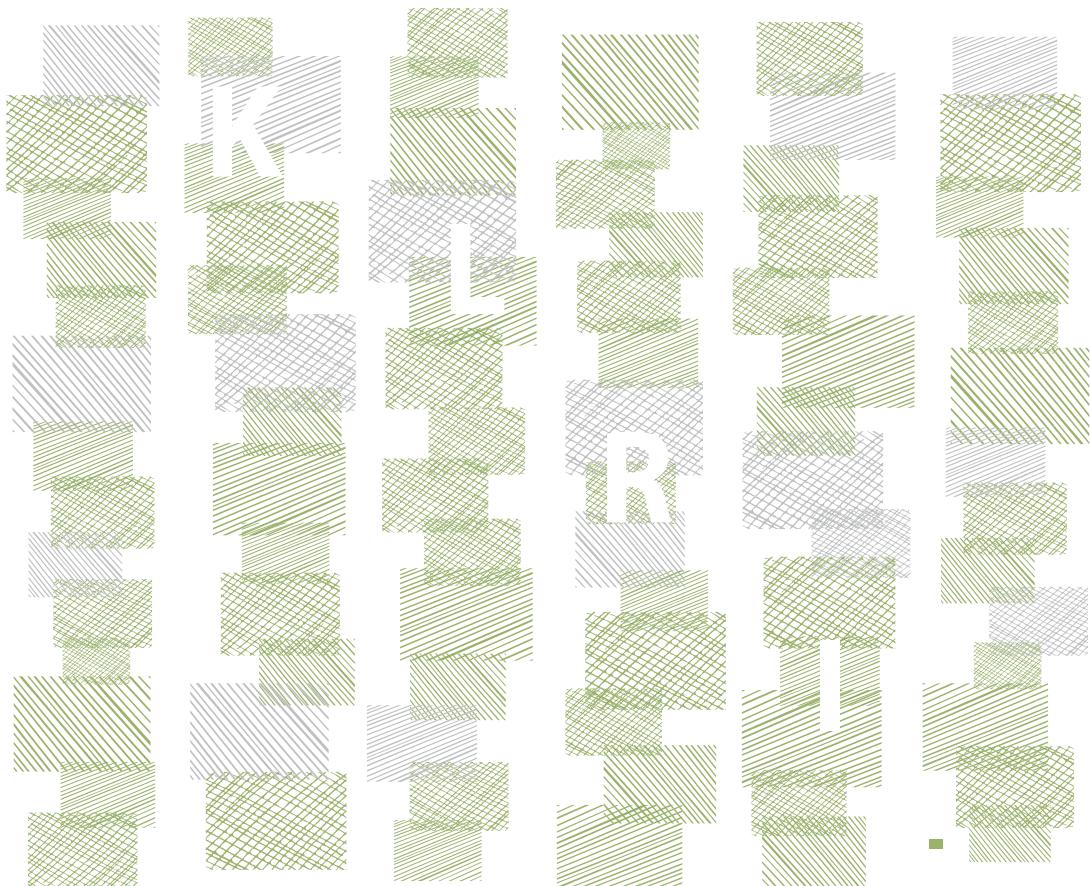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 광 동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Measures to Introduce Financial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연구책임자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ark, Kwang-Dong

2020. 10. 30.





## 연 구 진

연구책임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의위원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형미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연구감리위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협동조합의 자본 전달이 용이하지 않음
- 정부에서는 COOP 2.0시대로의 도약에 따른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동조합의 자본전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자본전달방안으로 금융(공제 포함)제도 및 비분할 적립금 법제도 도입에 대한 해외 입법사례 및 법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II. 주요 내용

-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법정적립금제도와 임의적립금제도 있음
  - 우선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중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이미 규정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인정함. 다만, 현행 협동조합의 8개개별 법률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법률에서는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용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기금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서는 기금 관련 규정이 있음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및 8개개별 협동조합 법률에서 공제사업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비분할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규정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음(제104조),
-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우선출자 제도는 「유럽협동조합법」,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법」과 프랑스 「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PECOL)」, 프랑스(금융협동조합), 포르투갈 「상법」(협동조합채권), 이탈리아(출자증권 등의 금융상품), 독일(협동조합은행)에서 이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민법」, 스페인 「협동조합법-법정적립금/교육홍보기금」, 포르투갈 「협동조합법-교육훈련기금」,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협동조합발전기금」이 규정되어 있음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독일 「보험감독법」, 스페인 「사회적 경제법」과 각 자치주법, 프랑스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상호공제 및 공제조합)」에 규정이 있음
  - 비분할 적립금과 관련하여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스페인 및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프랑스(「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이탈리아 「판돌피 법(Pandolfi Law)」 및 「민법」에 규정이 있음

-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
  -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의 기준은 ICA 협동조합 원칙 및 ICA 2020-2030년 전략계획에 따라야 할 것임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제도에 대해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 증권 첨유자에 대한 적법한 소지인 추정 규정이나, 제3자 대항요건 등에 대한 규정, 외부투자자의 매입한도 근거 규정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 직접적 금융업 도입보다는 종전의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중 금융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가치 연대 기금처럼 사회적 경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
  - 금융 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최소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기금 또는 교육훈련기금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방안의 검토 필요
  -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한 하위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함
  - 비분할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홍보기금 또는 교육훈련기금에 대한 비분할 적립금의 법제화 검토가 필요함

### III. 기대효과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입법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수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자본전달체계에 대한 법제화에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 주제어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 자본전달



##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 Although the number of cooperativ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Korea is on the rise, it is not easy for cooperatives to transfer capital.
- When the government formulates the Third Basic Plan for Cooperatives in line with the leap to the age of COOP 2.0, it presents various measures for cooperative capital transfer.
-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overseas legislat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including mutual aid) system and the reserve fund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system as a capital transfer proposal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II. Main Content

- Statu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financial and non-divided system under the laws related to cooperatives
  -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describes the legal reserve fund system and the voluntary reserve fund system.
  - Preferred equity investment systems are already described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the Forest Cooperatives Act, the

Saemaul Bank Act, and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i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With regard to the financial system, a general cooperative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may not engage in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but in the case of a social cooperative, small-amount loans and mutual assistance to its members are permitted. However, out of the current eight individual Acts of cooperatives, except for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other 7 individual Acts provide for credit business that cooperatives can carry out.
- Regarding the financial system,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funds i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but there are provisions concerning funds in the Forest Cooperatives Act, the Credit Cooperatives Ac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operatives Act.
- With regard to mutual aid systems, all mutual aid activities are provided for in the “Basic Act on Cooperatives” and the laws of eight individual cooperatives.
-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nd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provide for the non-divided reserve system, an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provides similar provisions for social cooperatives (Article 104).

- Introduction of financial and non-divided reserve systems under the laws of cooperatives in major countries
  - Preferred equity investment systems are described in the European Cooperative Association Act and the Cooperative Association Act of Quebec in Canada and the Cooperative Association Act of France.
  - Cooperatives can operate Financial systems in the EU under the “Principle of European Cooperatives Law (PECOL)”, in France (Financial Cooperatives), in Portugal under “Commercial Code” (Cooperative Bond), in Italy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investment certificates) and in Germany (Cooperative Bank).
  - Italy’s Civil Code, Spain’s Cooperative Act(Legal Fund for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Portugal’s Cooperative Act(Education and Training Fund), and France’s Social Solidarity Economy Act (Cooperative Development Fund) describe the financial system that the cooperatives can carry out.
  - The mutual aid system is described in Germany’s ‘Insurance Supervision Act,’ Spain’s ‘Social Economy Act’ and autonomous state law, and France’s ‘Act on the Status of Cooperatives (Mutual Aid and Mutual Aid Associations).’
  - Non-divided reserve funds are provided in the PECOL, Spain and Portugal Cooperative Acts, France (“Social Solidarity Economy Act”), and Italy’s Pandolfi Law and Civil Code.

- Direction of cooperative capital procurement
  - Criteria for direction of cooperative capital procur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ICA Cooperative Principles and the ICA 2020-2030 Strategic Plan.
  - Regarding the preferred equity investment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legal grounds for the purchase and incineration of preferred equity investment, provisions for the presumption of legal holder for the possessor of securities, provisions for third-party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and provisions for the grounds for external investors’ purchase limits.
  - With regard to the financial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that enable the use of social and economic finance, such as financial cooperatives and social value solidarity funds, among cooperatives under the existing Individual Cooperatives Act,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direct financing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With regard to the financi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t least provisions for th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und 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Fund for cooperatives.

- Regarding mutual aid systems, it is necessary to embody mutual aid systems in the subordinate laws and regulations under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Regarding the non-divided reserv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legislate th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und 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Fund as the non-divided reserve.

### **III. Expected Effects**

- This report serves as a fundamental data or materials for financial legislation recommend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both at home and abroad.
- It also serves as a basic data or materials to legislate the capital transfer system for supporting economic independence of cooperatives.

► **Key Words : Cooperatives, Social Cooperatives, Cooperative Act,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Capital Transfer**



# 목차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5
Abstract .....	9

## 제1장 서 론 / 17

I. 연구의 목적 .....	19
II. 연구의 범위 .....	25

## 제2장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27

I.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적립금 제도 .....	29
II.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	30
III.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	33
IV.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	41
V.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	46

## 제3장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51

I. 「협동조합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	53
II.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	55
III.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	61
IV.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63

## 목차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장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 / 65

I. 법제 도입 방안의 방향성 .....	67
II. 「협동조합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	71
III.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	74
IV.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	77
V.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	77

제5장

결 론 / 79

참고문헌 .....	85
------------	----

제1장  
서 론

- I . 연구의 목적
- II . 연구의 범위



## 제1장

# 서 론

### I. 연구의 목적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컨대, 2018년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수가 14,526개로, 2016년(10,615개) 대비 36.8% 증가하였으며,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61.6→67.0 명) 및 출자금(47→5천 7백만 원)과 매출액(2.7→3.7억 원) 등이 증가하는 등 운영·경영 성과에서 개선추세를 보인다.<sup>1)</sup>

또한, 협동조합의 지속적 증가 현상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합당 평균 출자금은 5,744만 원으로 2018년도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4,695만 원)에 비해 1,049만 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항후 1~2년 이내 협동조합의 69.1%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조합 임원(48%) 및 조합원 차입(30.6%)을 통해 이를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

1) 기획재정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2020.3.31., 2면.

2) 기획재정부, 위의 실태조사 결과, 8면.

[표1] 협동조합 2·3·4차 실태조사 주요 결과 비교(조합당 평균)<sup>3)</sup>

구분	2차 조사 * 14년 말 기준	3차 조사 * 16년 말 기준	4차 조사 * 18년 말 기준
운영 조합수 (운영률) <sup>1)</sup>	2,957개 (54.6%)	5,100개 (53.4%)	7,050개 (54.2%)
조합원수	46.8명	61.6명	67.0명
고용	취업자수 <sup>2)</sup>	3.9명 (총 11,605명)	5.3명 (총 27,129명)
	피고용자 <sup>2)</sup>	2.7명 (총 7,967명)	4.0명 (총 20,409명)
	임금근로자 <sup>2)</sup>	2.2명 (총 6,484명)	3.5명 (총 17,707명)
	월평균 임금	130.4만원	131.3만원
	주당 근로시간	36.1시간	34.4시간
	취약계층 <sup>3)</sup> 비율(인원)	26.8% (1,787명)	43.3% (7,662명)
재무·영업	자산	5,630만원	14,022만원
	자본 (출자금)	4,007만원	4,607만원 (4,695만원)
	부채	162만원	9,415만원
	매출액	2억 1,039만원	2억 7,272만원
	당기순이익	1,935만원	373만원

1) 운영 협동조합 = 해당연도에 조세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협동조합  
운영률 = (운영 협동조합 / 법인 등기 협동조합) \* 100

2) 임금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협동조합 일을 하는자  
피고용자 = 임금근로자 + 유급형 임원(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종사)  
취업자 = 피고용자 + 무급형 상근임원 + 유급형 자원봉사자(실비지원)

3) 취약계층: 55세이상 고령자, 경련단절여성, 장애인, 고용취약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3) 기획재정부, 위의 실태조사 결과, 13면.

이와 같이, 협동조합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이는 협동조합의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으로, 협동조합의 규모화 필요성이 높다.<sup>4)</sup>

그런데, 문제는 협동조합의 자본 전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자본을 전달하는 방법은 자기자본 전달방식(조합원의 출자와 잉여금의 조합 내부유보)과 타인자본 전달 방식(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이 있다.<sup>5)</sup>

이때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인한 자본 전달은 매우 고정적이고 한정적이며, 잉여금의 조합 내부 유보는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타인자본 전달 방식인 금융기관에서의 차입도 금융기관의 엄격하고 제한적인 조건에 의해 자본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COOP 2.0시대로의 도약에 따른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4) 기획재정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3.31., 2면.

5) 박준모, 자본 조달 다양화, 협동조합 안정적 경영 위한 필요조건, 어업수산, 2019.5.22.(방문일: [http://www.suh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94\(2020.10.15\)](http://www.suh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94(2020.10.15)))

[표2]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비전 · 목표 · 전략<sup>6)</sup>

비전	COOP 2.0 시대로의 도약		
목표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성과지표	'18년	'22년
	평균 출자금	5,744만원	8,000만원
	평균 매출액	3.7억원	6.0억원
	취약계층 고용비율	42.3%	45%
	연합회·협의회 가입률	39.9%	60%
전략	A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 지원</li> <li>▶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li> <li>▶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지원</li> </ul>	
	B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회 역할 강화</li> <li>▶ 협동조합간 연대 촉진</li> <li>▶ 자율규제 강화</li> </ul>	
	C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전달체계 개선</li> <li>▶ 자치단체 사업 참여 확대</li> <li>▶ 자치단체 추진체계 공고화</li> </ul>	
	D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제한 완화 및 동등한 혜택 제공</li> <li>▶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li> <li>▶ 금융조달 애로 해소</li> </ul>	
	E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li> <li>▶ 현장·참여형 교육 확대</li> <li>▶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홍보</li> </ul>	

6)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관계부처 합동, 2020.3.31., 10면.

이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중 COOP 2.0시대로의 도약 전략 중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서는 협동조합의 자본전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우선 출자 제도를 활용한 자기자본 확충, 사회적 금융 활성화, 협동조합 내부전달의 안정성 강화 등의 협동조합 자본전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이,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자본전달 방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자본전달 방안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주로 조합원출자금, 우선출자금, 조합원차입금, 은행차입금 등이 논의되어 왔다.

[표3] 협동조합 자금수단의 비교<sup>8)</sup>

구분	조합원출자금	우선출자증권	조합원차입금	은행차입금
위험	높음	조합원출자금에 앞서 상환가능하지만 모든 채무에 대해 후순위	자기자본보다는 선순위지만 일반적으로 외부 차입보다는 후순위	가장 낮음 일반적으로 청산 시 가장 먼저 상환됨.
수익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없음. 다만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의할 수 있음. <sup>주1)</sup>	변동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8% 내에서. <sup>주2)</sup>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기대배당률을 계시하지만 배당선언은 협동조합의 수익성에 달려 있음. 배당은 순이익의 다른 할당보다 우선권을 가짐.	이자율은 고정. 계약 시 설정됨. 때로는 조합원에게 이자 지급은 수익성이 갖춰지기 전까지 선순위 채권자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대출약관에 따라 고정적이고 정기적임. 수익성에 따라 변동되지 않음.
상환	대부분 비유동적.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할 때 상환됨.	일반적으로 상환을 위한 목표기간을 가짐. 이는 계약조건과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함.	차입금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일자	차입금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일자
구분	조합원출자금	우선출자증권	조합원차입금	은행차입금
통제권	완전 출자증권의 소유자 만이 협동조합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합병과 청산에 대해 제한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음. 때때로 우선출자증권의 구매는 조합원에게 한정됨.	없음. 조합원일 경우는 예외. 부채는 통제권이 없음.	없음. 부채는 통제권이 없음.
변동 가능성	가장 변동이 큰 자본	두 번째로 변동이 큰 자본	변동가능한 자본. 다만 자기자본보다 수익률과 상환일자가 훨씬 고정적임.	가장 변동이 덜한 자본. 이자율과 상환일자가 고정임. 그 밖의 계약조건과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주1) 우리나라에서는 조합원출자금의 출자배당은 출자금의 10% 내에서 가능  
 주2) 미국의 상황임.

7) 관계부처 합동, 위의 기본계획, 22면.

8) 서진선, 협동조합 자본조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0, 5-6면.

그러나 종래의 협동조합 자본전달 방안과 더불어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 전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협동조합 현장의 의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4] 협동조합 자본전달 방안에 관한 인터뷰 내용<sup>9)</sup>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조합도 기업의 한 형태. 기업 활동의 자유란 측면에서 특정 사업을 법적으로 배제할 이유가 없음</li> <li>협동조합은 회사와 다른 목적 및 사업방식을 갖는 기업. 따라서 성과 측정도 다른 기준을 가질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협동조합은 일반 금융기관들을 이용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따름.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업과 공제사업체가 존재하는 것임</li> <li>규제의 범위는 허용의 방향 아래에서 정할 수 있을 것</li> </ul>
모심과살림연구소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공제는 사실상 금융보 협업으로 공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연합회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려 가능</li> <li>우선출자제도와 관련하여 이로 인한 사업의 부실 문제와 협동조합의 본질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li> <li>우선출자제도나 비분할 적립금제도 보다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함</li> </ul>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자본전달방안으로 금융(공제 포함)제도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에 대한 해외 입법사례 및 법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9) 2020년 7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및 모심과살림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사항.

## II. 연구의 범위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 방식은 견해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 는 협동조합의 자금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융 지원제도(기금, 우선출자제도, 개별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응자 지원), 협동조합의 사업으로서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협동조합의 내부에 의한 자본 조달방식으로는 적립금 및 공제, 비분할 적립금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공제 포함)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 현행 및 종래 국회 협동조합법의 입법(안)상의 금융(공제 포함)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의 도입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법률상의 금융(공제 포함)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협동조합 법률상에 금융(공제 포함) 및 비분할 적립금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고자 한다. 이때 주요 국가의 선정과 관련하여 종래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국제협동조합연맹), 프랑스, 독일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있었으나, 협동조합의 자본전달방식과 관련하여서는 ICA, 프랑스, 독일 이외에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고, 협동조합의 자본전달방식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제도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협동조합의 법제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협동조합 자본 조달 법제도 도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ICA의 협동조합 원칙의 관점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공제 포함)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의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위 설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협동조합의 자본전달 구축을 통한 규모화를 이룰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의 방향성을 구축하고자 한다.

## 제2장

#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I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적립금 제도
- II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 III .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 IV .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 V .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 제2장

#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I.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적립금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자기자본과 관련하여 법정 적립금제도와 임의 적립금제도가 있다. 우선 법정 적립금제도는 협동조합이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다만,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3항). 그런데,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비분할 적립금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이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임의적립금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이러한 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

조제2항). 이때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3항).

## II.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협동조합이 전달할 수 있는 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전달하는 자기자본(출자금)과 그 외로부터 전달하는 타인자본(금융권이 용자)으로 나뉜다.<sup>10)</sup>

그런데 최근 자기자본 전달의 개선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일부 개정([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일부개정])을 통하여, 우선출자 규정(제22조의2)을 도입하였다. 우선출자 제도는 의결권과 선거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일반 조합원보다 우선 실시하고,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제도이다.<sup>11)</sup>

종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전달의 필요로 인해 이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새로운 자본전달수단으로 인하여 협동조합 고유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sup>12)</sup>

다만, 우선출자제도는 개별 협동조합 법률 중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10) 정순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공익과 인권 제19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대학교 인권법학회, 2019, 264면.

11) 정순문,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쟁점”, 모심과 살림 제15호, 모심과 살림 연구소, 2020.9., 18면.

12) 정순문, 앞의 글(공익과 인권 제19호), 270면.

그리고, 입법적으로도 2017년 10월 19일 정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우선출자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반영은 되지 않았다가<sup>13)</sup>, 2020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우선출자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우선출자제도의 도입이유는 협동조합이 자본전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경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조합의 내부자금을 확충하여 자본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4)</sup>

2020년 10월 1일에 시행된 우선출자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출자 총액 한도 및 배당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sup>15)</sup>

#### [표5]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규정<sup>16)</sup>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

- 13)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14) 석영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18.11. 38면.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 개정이유,([#\)\(방문일: 2020.8.17\)](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169&lsId=&efYd=202010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16)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 기본법」,([\(방문일: 2020.10.13\)](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169&lsId=0115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0000))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p>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p> <p>1.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p> <p>2. 납입출자금 총액</p> <p>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p> <p>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한다)에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p> <p>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p> <p>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p> <p>제8조의3(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p>

### III.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 1. 금융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표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17)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은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 리스·신용 카드 및 할부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 기금 관리·운용 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li> <li>○ 보험 및 연금업은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 소득 보장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 포함</li> <li>○ 금융,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은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관련 서비스 활동 포함</li> </ul>
분류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이전 지출에 의하여 생활 무능력자의 소득 결손 및 손실 등을 보상하는 활동은 “84500: 사회보장 행정”에 분류</li> <li>○ 정부기관 및 사립 복지기관이 정부 이전 지출과 자선 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회 복지사업은 “87: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분류</li> <li>○ 운용리스는 “76: 임대업”에 분류</li> <li>○ 특정 사업용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 금융업에 포함되나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li> </ul>

17) 통계청,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 통계청, 2019.12., 47-48면.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인정하고 있다(제94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지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제94조제1항). 이때 소액대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그리고, 소액대출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정관으로 정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소액대출 사업은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또한, 상호부조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 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 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것은 법 제정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협동조합금융업의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한 것이다.<sup>18)</sup>

이에 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금융업 및 보험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협동조합에 관한 차별적 법령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sup>19)</sup> 또한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사실상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내부의 자본전달에만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

1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59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https://likm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O8J1L0Q1K5L1M0U1K6J0G9E3I2EO](https://likm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O8J1L0Q1K5L1M0U1K6J0G9E3I2EO))(검색일: 2020.8.17)

19) 정순문, 협동조합의 법인 성격 규명 및 제도개선 과제, “협동조합 기본법 2.0시대를 준비하자(발표자: 김기태)” 토론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2018.8.24., 38면.

가 있음으로,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을 삭제하자는 입법안이 있었다.<sup>20)</sup>

그리고 현행 협동조합의 8개 개별법률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법률에서는 협동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용사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표7]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금융업이나 보험업 허용 규정

법률명	규정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p><b>제57조(사업) ①</b></p> <p>1. ~ 2. (생략)</p> <p>3. 신용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li> <li>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li> <li>다. 내국환</li> <li>라. 어음할인</li> <li>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li> <li>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li> <li>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li> <li>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li> </ul> <p>4. (생략)</p> <p>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p> <p>③ ~ ⑦ (생략)</p>
「산림조합법」	<p><b>제46조(사업) ①</b></p> <p>1. ~ 3. (생략)</p> <p>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li> </ul>

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59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O8J1L0Q1K5L1M0U1K6J0G9E3I2E0](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O8J1L0Q1K5L1M0U1K6J0G9E3I2E0))(검색일: 2020.8.17)

법률명	규정 내용
	<p>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保護預受業務)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5. ~ 12. (생략)      ②      1. ~ 8. (생략)      ③ ~ ④ (생략)</p>
「새마을금고법」	<p>(금고)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p> <p>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 8. (생략)      ② ~ ⑥ (생략)</p> <p>(중앙회) 제67조(사업의 종류 등) ①</p> <p>1. ~ 4. (생략)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          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 · 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 12. (생략)      ② ~ ⑥ (생략)</p>

법률명	규정 내용
	<p>(지구별수협) 제60조(사업) ①</p> <p>1. ~ 2. (생략)</p> <p>3. 신용사업</p> <p>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p> <p>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p> <p>    다. 내국환</p> <p>    라. 어음 할인</p> <p>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p> <p>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 · 귀금속 · 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p> <p>4. ~ 15. (생략)</p> <p>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p> <p>③ ~ ⑦ (생략)</p>
『수산업협동조합』	<p>(수협중앙회) 제138조(사업) ①</p> <p>1. ~ 3. (생략)</p> <p>4. 상호금융사업</p> <p>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 · 관리</p> <p>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p> <p>    다. 회원의 예금 · 적금의 수납 · 운용</p> <p>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p> <p>    마.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p> <p>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p> <p>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p> <p>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 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 · 매출</p> <p>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및 대금의 결제</p> <p>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p>

법률명	규정 내용
	<p>및 대금의 결제 5. ~ 17. (생략)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제4절의2 수협은행</p>
「신용협동조합법」	<p>(조합)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p> <p>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 · 공공단체 · 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 · 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          예수(保護預受) 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          리 · 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          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7. (생략)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          탁금 · 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p>
	<p>(중앙회)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p> <p>1. ~ 4.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p>

법률명	규정 내용
	<p>마. 조합에 대한 자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          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          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 9. (생략)          ② ~ ⑥ (생략)</p>
「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	<p>(조합) 제14조(사업) ①</p> <p>1. ~ 2. (생략)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 8. (생략)          ② (생략)</p> <p>(중앙회) 제32조(사업)</p> <p>1. ~ 2. (생략)          3.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 8. (생략)</p>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p>(협동조합) 제35조(업무) ①</p> <p>1. ~ 4. (생략)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          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 15. (생략)          ② ~ ③ (생략)</p> <p>(사업협동조합) 제82조(업무) ①</p> <p>1. (생략)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          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 12. (생략)          ② ~ ③ (생략)</p>

법률명	규정 내용
	<p>(협동조합연합회) 제93조(업무) ①</p> <p>1. ~3. (생략)</p> <p>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p> <p>5. ~ 16. (생략)</p> <p>② ~ ④ (생략)</p>

## 2. 기금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기금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률 중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서는 기금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8]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기금 관련 규정

법률명	규정 내용
「산림조합법」	<p>제108조(사업) ①</p> <p>1. ~ 5. (생략)</p> <p>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 · 운용</p> <p>6의2 ~ 10. (생략)</p>
「신용협동조합법」	<p>(중앙회) 제80조의3(기금의 조성 · 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p> <p>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p> <p>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p> <p>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p> <p>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p> <p>5. 그 밖의 수입금</p> <p>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률명	규정 내용
	<p>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p> <p><b>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b>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p> <p>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p> <p>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p> <p>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p>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p>(중소기업중앙회)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p> <p>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p> <p>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p> <p>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p> <p>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p> <p>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p> <p>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p>

## IV.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3조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중에 제80조의2에서 공제사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협동조합 연합회 등은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을 제외한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제80조의2 제1항). 즉,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공제제도는 협동조합 연합회 등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현행 협동조합의 8개개별 법률에서는 협동조합의 사업으로서 공제사업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표9]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규정 현황

법률명	규정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p><b>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b> ①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p> <p><b>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b>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p>
「산림조합법」	<p><b>제46조(사업)</b> ①            1. ~ 5. (생략)            6. 공제사업            7. ~ 12. (생략)            ② ~ ④ (생략)</p> <p><b>제48조(공제규정)</b>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법률명	규정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 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금고)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1. ~ 4.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 8. (생략) ② ~ ⑥ (생략)  (중앙회) 제67조(사업의 종류 등) ① 1. ~ 5. (생략)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 12. (생략) ② ~ ⑥ (생략)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중앙회)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1. ~ 2. (생략)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 10. (생략) ② (생략)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생략) 1. 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 6. (생략) ② ~ ③ (생략)

법률명	규정 내용
	<p>(지구별수협) 제60조(사업)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공제사업</li> <li>② ~ ⑦ (생략)</li> </ul> <p><b>제60조의2(공제규정)</b>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 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p>
『수산업협동조합』	<p>(업종별수협) 제107조(사업)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공제사업</li> <li>4. ~ 15. (생략)</li> <li>② (생략)</li> </ul>
	<p>(수산물가공 수협) 제112조(사업)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공제사업</li> <li>4. ~ 13. (생략)</li> <li>② (생략)</li> </ul>
	<p>(수협중앙회) 제138조(사업)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생략)</li> <li>5. 공제사업</li> <li>6. ~ 17. (생략)</li> <li>② ~ ⑨ (생략)</li> </ul> <p>제4절의2 수협은행</p>

법률명	규정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p>(조합)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p> <p>1. ~ 5.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 9. (생략) ② ~ ③ (생략)</p> <p>(중앙회)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p> <p>1. ~ 2.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 9. (생략) ② ~ ⑥ (생략)</p>
『엽연초생산 협동조합법』	<p>(중앙회) 제32조(사업)</p> <p>1. ~ 3. (생략)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 8. (생략)</p>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p>(협동조합) 제35조(업무) ①</p> <p>1. ~ 13. (생략)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생략) ② ~ ③ (생략)</p> <p>(사업협동조합) 제82조(업무) ①</p> <p>1. ~ 9.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 ~ 12. (생략) ② ~ ③ (생략)</p> <p>(협동조합연합회) 제93조(업무) ①</p> <p>1. ~ 14. (생략)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p>

법률명	규정 내용
	16. (생략) ② ~ ④ (생략)

## V.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현재 우리 정부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협동조합의 경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비분할 적립금 제도에 대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up>21)</sup>

비분할 적립금은 손실에 대비하거나 투자자금으로 쓰도록 배당이 금지된 협동조합의 공동재산이다.<sup>22)</sup> 즉, 비분할 적립금은 협동조합 영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잉여금을 개별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조합 내부에 유보하여 적립한 공유재산(commons) 또는 공동사유(commonprivate)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sup>23)</sup>

그런데 견해에 따라서 [표10]의 출자금 및 비분할 적립금 관련 조항 정리에서 보듯이 비분할 적립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존속기간 동안에는 조합원들에게 배당되지 않고 청산 시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 가능한 비분할 적립금 유형과 「농업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존속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청산 시에도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비분할 적립금 유형으로 나뉜다는 입장이 있다.<sup>24)</sup>

21) 관계부처 합동, 위의 기본계획, 22면.

22) 박찬준, 협동조합·주식회사 M&A 길 열린다, 세계일보 2013.12.29.(<http://www.segye.com/newsView/20131229002753?OutUrl=naver>(방문일: 2020.8.17))

23) 서진선/최우석, “협동조합 출자금과 비분할 적립금의 자기자본-부채 분류: 협동조합 관련법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3권 제5호, 대한경영학회, 2020.5., 866면.

24) 서진선/최우석, 앞의 논문, 877면.

[표10] 출자금 및 비분할 적립금 관련 조항 정리<sup>25)</sup>

구분	지분환급	손실부담 (환급거부)	손실 보전	지분	청산 잔여재산
농업 협동 조합	법	제31조 지분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2조 탈퇴 조합원의 손 실액 부담	제68조 손실 의 보전과 잉 여금의 배당	제86조 청산 잔여재산 제87조 청산 인의 재산 분 배 제한
	표준 정관	제13조 지분환급	제14조 탈퇴 조합원의 손 실액 부담	제149조 결손보전	제28조 지분계산 제153조 청산
수산 업 협동 조합	법	제33조 지분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4조 탈퇴 조합원의 손 실액 부담	제71조 손실 의 보전과 잉 여금의 배당	제88조 청산 잔여재산 제89조 청산 인의 재산 분 배 제한
	표준 정관	제27조 지분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 탈퇴 조합원의 손 실액 부담	제76조 결손 금 보전과 잉 여금의 배당	제30조 지분계산 제82조 청산
산림 조합	법	제28조 지분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9조 탈퇴 조합원의 손 실액 부담	제56조의3 손실의 보전 과 잉여금의 배당	제71조 청산 잔여재산 제72조 청산 인의 재산 분 배 제한
	표준 정관	제20조 지분환급	제21조 탈퇴 조합원의 손 실액부담	제79조 결손보전	제33조 지분계산 제83조 청산

25) 서진선/최우석, 앞의 논문, 872-873면.

구분		지분환급	손실부담 (환급거부)	손실 보전	지분	청산 잔여재산
신용 협동 조합	법	제17조 탈퇴 하거나 제명 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7조 탈퇴 하거나 제명 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52조 손실 금의 처리		제58조 청산 잔여재산
	표준 정관	제16조 탈퇴 하거나 제명 된 조합원의 출자금 등의 환급	제16조 탈퇴 하거나 제명 된 조합원의 출자금 등의 환급	제70조 손실 금의 처리	제27조 지분계산	제77조 청산 잔여 재산의 처리
소비 자 생활 협동 조합	법	제20조 지분 환급청구권		제50조 손실 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 잔여 재산의 처리
	표준 정관	제16조 탈퇴 · 제명 조합원의 지 분환급청구권		제61조 손실 금의 보전		제66조 청산 잔여 재산의 처리
중소 기업 협동 조합	법	제26조 탈퇴자의 지분 의 환불과 그 정지	제26조 탈퇴자의 지분 의 환불과 그 정지			
	표준 정관	제17조 탈퇴자의 지분 의 환불과 그 정지	제17조 탈퇴자의 지분 의 환불과 그 정지	제69조 결손 의 처리	제18조 지분 의 범위	제74조 청산 재산의 처리
	규약례			제91조 손실 금의 보전	제89조 지분 의 계산 제90조 지분 대장	

구분		지분환급	손실부담 (환급거부)	손실 보전	지분	청산 잔여재산
일반 협동 조합	법	제26조 지분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9조 총회 의 의결사항	제51조 손실금 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9조 잔여 재산의 처리
	표준 정관	제16조 탈퇴 · 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 청구권	제1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4조 총회 의 의결사항	제68조 손실금의 보전	제20조 지분의 범위	제73조 청산 잔여 재산의 처리
사회 적 협동 조합	법	제89조 출자 금환급청구권 과 환급정지	제90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8조 손실금 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04조 잔여 재산의 처리
	표준 정관	제16조 탈퇴 · 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 청구권	제1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3조 총회 의 의결사항	제69조 손실 금의 보전		제73조 청산 잔여 재산의 처리

다만, 원칙적인 비분할 적립금은 존속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청산 시에도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협동조합 등에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 중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비분할 적립금 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 중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비분할 적립금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표11]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유사 제도 규정 현황

법률명	규정 내용
	<b>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b>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li> <li>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li> </ol>
「농업협동조합법」	<b>「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청산)</b>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조합의 총회에서 정하는 조합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귀속조합을 정할 수 없는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의 의견과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고려하여 정하는 조합에 귀속한다. ④ (생략)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b>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b>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다만,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 제3장

#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I . 「협동조합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 II .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 III .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 IV .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제3장

#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관련 법률상의 금융 및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 I. 「협동조합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협동조합이 자본전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경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조합의 내부자금을 확충하여 자본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sup>26)</sup> 자기자본 전달의 개선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이 일부 개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일부개정]) 되면서 우선출자 규정 (제22조의2)을 도입하였다.

해외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서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유럽협동조합법(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캐나다의 퀘벡주 「협동조합법(C-67.2 Cooperatives Act-Chapter)」과 프랑스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률(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이 있다.

우선, 「유럽협동조합법」의 법률은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의 발행을 규정하거나 보유자에게 의결권이 없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인수가 회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유럽협동조합법」 제64조제1항). 그리고 “이 유가증권 또는 사채의 보유자는 법령 또는 발행 시 정한 조건에 따라 특별한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유럽협동조합법」 제64조제2항).

26) 석영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18.11., 38면.

둘째,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법」에서는 협동조합 출자증권에는 보통출자증권(common share), 우선출자증권(preferred share), 참여우선출자증권(participating preferred share)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협동조합법」 제37조).

우선주 보유자는 총회의 통지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투표하는 등 협동조합의 어떤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협동조합법」 제49조). 그리고 참여 우선주 보유자는 주식에 대해 지불한 금액의 최대 25%의 연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지만, 발언권은 부여되지 않는다(「협동조합법」 제49.3조 및 제49.4조).

다만, 운영 임여금 또는 임여 소득에 의해 할당된 이자를 포함하여 우선주와 참여 우선주에 배당된 이자는 공제된다(「협동조합법」 제143조).

셋째, 프랑스의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선출자주를 조합원 또는 후원조합원이 취득할 수 있고, 다른 지분보유자들보다 우선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이익우선배당출자주(parts à intérêt prioritaire sans droit de vote)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 제11조의2).

무의결권 우선주 소유자들의 권리에 수정을 가하는 모든 결정은 임시총회의 투표에서 출석하거나 대리된 우선주 소유자들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결정한 후에야 채택될 수 있다(「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 제11-2조).<sup>27)</sup>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에게 발행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발행 총액이 이전 회계연도의 자본금 절반을 초과할 수가 없는 협동조합출자증권(certificats coopératifs d'associés)(「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 제19조의16 내지 제19조의22)과 지분과 채권이 혼합된 형태이며 양도가 가능하고(「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 제11조), 금융기관이 조합원에게만 발행할 수 있는 양도 가능한 증권으로 역시 의결권은

---

27) 한정미/이준서/김현희/김명아/김정현,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해외법제조사 및 분석연구, 기획재정부, 2012, 88면.

없는 협동조합특별주(coopérative de parts sociales)도 있다(「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 제19조의23).

[표12] 프랑스 협동조합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sup>28)</sup>

	협동조합특별주	무의결권 이익우선배당 출자주	협동조합투자증권	협동조합출자증권
도입년도	1992	1992	1987	1992
조문	제11조	제11조의2	제19조의18	제19조의23
발행대상	조합원  비이용조합원	조합원  비이용조합원  비조합원	조합원  비이용조합원  비조합원	조합원
의결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발행한도		전 회계연도 자본금의 50% 이하	전 회계연도 자본금의 50% 이하	전 회계연도 자본금의 50% 이하
비고				금융기관만 발행

## II.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 1. 금융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

28) 박광동/김형미/Hirota Yasuyuki/강봉준/신창섭/홍고우니/홍성민,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95면.

위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및 제80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인정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 PECOL)」에서는 “협동조합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영리(profits as the ultimate purpose)를 추구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법인(private legal persons)으로서, 보편적으로 승인되는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에 관한 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specific) 재무 구조를 가진다”(『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제3.1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조직(business organisations)으로서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지분(shares), 적립금(reserves), 대출 및 기타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활용하여 자본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제3.1조제2항).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금융협동조합(coopératives bancaires, Code monétaire et financier)(농업상호신용조합, 협동조합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을 협동조합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에 금융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상법」에서 규정한 회사채를 준용하는 형태로 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협동조합법(Lei Basilar de Cooperativismo)』 제95조 제1항).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협동조합은 금융상품(출자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다.

[표13] 프랑스 금융협동조합<sup>29)</sup>

금융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은행(BPCE)	
목적	공동유대에 의한 상호부조
근거 법령	1982년 5월 17일자 법률 제82-409호(통화금융법전으로 편입됨), 통화금융법전 제L213-32조~제L213-35조, 제L312-4조~제L312-8조, 제L511-9조, 제L511-10조, 제L511-29조~제L511-32조, 제L512-1 조, 제L611-6조, 제L613-10조, 제L613-11조, 제L613-19조, 1947년 9월 10일 자 법률 제47-1775호, 2014년 7월 31일 자 법률 제2014-856호
지위	확정자본의 상사회사 유한회사(SARL) 또는 주식회사(SA)(1982년 법 률 제1조)
발기인	조합원 : 출자자

그런데, 독일은 협동조합은행의 효시 국가로서 독일의 협동조합은행들은 일관 체제(Verbund)로 불리는 강력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sup>30)</sup> 그리고 「신용조직법(Gesetz über das Kredit-wesen)」을 비롯한 법률은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 senschaften)」이 협동조합 설립의 기본적 사항만 규정한 것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신용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sup>31)</sup>

29) 박광동/김형미/Hirota Yasuyuki/강봉준/신창섭/홍고우니/홍성민, 앞의 보고서, 82면.

30) 박창균/ 이진범/ 민세진,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 2012, 140면.

31) 정숙희, 직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8면.

[표14] 프랑스-독일-일본의 협동조합은행의 조합원 자격<sup>32)</sup>

국가	개요
프랑스	- 정관에 따라 지역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독일	- 특정 구역 내에 주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해야 함 - 협동조합은행의 모법정관은 조합원 자격에 대해 자연인, 인적회사, 사법 또는 공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고 있음 -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협동조합은행도 있음
일본	- 농협은 각 협동조직금융기관의 근거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한정

또한, 스페인의 경우에 몬드라곤 협동조합 은행 라보랄 쿠차(Laboral Kutxa) 등이 운영되고 있다.

[표15] 몬드라곤 협동조합 은행 라보랄 쿠차(Laboral Kutxa)<sup>33)</sup>

개요
- 1959년에 까하 라보랄(Caja Laboral)을 설립하였는데, 까하 라보랄은 몬드라곤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기존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상담 등을 운영했으며, 1982년 이후에는 정부의 요청으로 일반인에게도 대출을 허용하였음

32) 農林中金総合研究所, 世界の協同組合組織の発展事例に係る調査委託事業報告書, 農林中金総合研究所, 2018, 133면.

33) Laboral Kutxa Corporative([https://corporativa.laboralkutxa.com/historia/?\\_ga=2.122322889.375315646.1598052506-813514708.1598052506](https://corporativa.laboralkutxa.com/historia/?_ga=2.122322889.375315646.1598052506-813514708.1598052506)(방문일: 2020.10.14.))

## 2. 기금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기금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민법」에서는 연간 순이익의 3%를 상호부조 기금(mutual funds)으로 할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45조의4). 또한, 상호적이지 않은 협동조합(non-cooperative a mutualità prevalente)의 영리회사로의 전환 시 보유하는 비분할 적립금은 상호기금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진흥과 발전을 위한 상호기금(la promozione e lo svilupo della cooperazione)에 대한 규정(제11조)이 59/1992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스페인 「협동조합법(1999.7.6. 제27호 법률(Ley 27/1999))」에서는 법정적립금(「협동조합법」 제55조)과 교육홍보기금(「협동조합법」 제56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협동조합은 보통 재단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교육 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소규모 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연맹에 기금을 적립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교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일정 비율을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에 할당할 의무가 있다.

또한,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에서는 「협동조합 교육 및 협동조합 조합원, 직원, 지역사회 의 문화 · 역량연수」를 위해 「교육훈련기금(Reserva para educação e formação cooperativas)」을 적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협동조합법」 제97조 제1항).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LOI n°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에서 협동조합들이 출자하여 협동조합발전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 기금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신설 지원, 출자 독려, 개발사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다(「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표16] 해외의 협동조합 지원 금융체제 유형 및 사례<sup>34)</sup>

종류	국가	설립 주체	형태	명칭	역할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은행 또는 기금 설립	스페인	협동조합 그룹 몬드라곤	협동조합 은행	라보랄 쿠차 (Laboral Kutxa)	전체 몬드라곤 협동조합 들의 기획 및 조정, 자원 의 재분배 기능 담당
	이탈리아	전국 협동조합 · 공제조합 연합회 레가코프	상호기금	코프펀드 (Coopfond)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기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금융협동 조합  중심의 지원	캐나다	데잘탱 신협	연대기금	데잘탱 연대경제금고 (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	협동조합이나 연대협동 조합을 설립,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자금지원
	캐나다	밴쿠버 저축 신용협동 조합 (밴시티)	사회적 금융	사회적 프로젝트 금융 (Social Project Financing)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신용 확대 및 지역사회에 기부
정부에서 협동조합 지원금융 기관 설립	미국	미국 연방 정부	협동조합 은행	전국협동조합 은행 (National Cooperative Bank)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상 업용 자금 대출 및 다양한 경영전문 서비스 제공

34) 김나라, 협동조합 금융지원 해외사례 연구, IBK기업은행/IBK경제연구소, 2017, 9면.

### III.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에 관해서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3조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중에 제80조의2에서 공제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공제제도는 협동조합 연합회 등 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에서 보험에 대한 규제 감독은 1901년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보험감독법」 제3편 상호보험조합(association)에서 공제조직에 관한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공제제도에 대해서 주로 과세제도와 연계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공제에 관해서는 「사회적 경제법」과 각 자치 주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 주법은 까탈루냐 자치 주법<sup>35)</sup>, 발렌시아 자치 주법<sup>36)</sup>, 마드리드 자치 주법<sup>37)</sup>, 바스크 자치 주법<sup>38)</sup> 등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2012년에 공제조합도 사회적 기업 등록부에 포함되었다.<sup>39)</sup> 그런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federations of cooperatives)에 의하여 관리되는 협동조합들의 발전을 위해, 연간 이익 중 3%를 협동의 촉진과 발전을 위한 공제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포르투갈에서 공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보험법(2002)」, 「공제조직법(1990)」, 「공제조합회계법(1995)」, 「사회적연대기관법(1983)」등이 있다.

35) Ley 10/2003, de 13 de junio, de Mutualidades de Previsión Social de Cataluña.

36) Ley 7/2000, de 29 de mayo, de Mutualidades de Previsión Social de la Comunidad Valenciana.

37) Ley 9/2000, de 30 de junio, de Mutualidades de Previsión Social de la Comunidad de Madrid.

38) Ley 5/2012, de 23 de febrero, sobre Entidades de Previsión Social Voluntaria.

39) Carlo Borzaga,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Country report ITALY, European Commission, 2020, p47 참조.

프랑스는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이 아닌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제4편에서 상호공제 및 공제조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표17] 대상 국가 자본전달제도 비교표

	자본전달제도	협동조합법	공제관련법
독일	조합원 출자(현물출자가능) 법정적립금 및 기타적립금 기업의 지분 및 자회사	협동조합법	보험감독법 장기간병보험개정법 질병공제금고법
스페인	조합원 출자 비조합원 출자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교육홍보기금	협동조합법 각 자치주법	사회공제보험규칙 민간보험조직감독법 각 자치주법
영국	조합원 출자 투자조합원 자회사 주식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산업공제조합법 우애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협동조합 및 지역사회조합법	회사법 우애조합법 금융서비스시장법 건축조합법 공제조합시행령 신용조합법
이탈리아	조합원 및 비조합원출자 법정적립금 분할 및 비분할 적립금 출자증권 자회사 기부금 협동조합상호지원기금	헌법 민법 일반법 개별법	상호부조조직법 공제조합법 민법 국민보험서비스법
포르투갈	조합원 출자(현물출자가능) 투자조합원 투자증권 협동조합채권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교육훈련기금	헌법 협동조합법 개별법(하위 법령)	공제조직법 공제조합회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보험법

	자본전달제도	협동조합법	공제관련법
프랑스	조합원 출자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무의결권이익우선배당출자금 협동조합투자증권 협동조합출자증권 협동조합특별주	민법 상법 협동조합법 개별법	보험법 공제조직법 농촌법 사회보장법

## IV.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도입 현황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분할 적립금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 중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비분할 적립금 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이에 대하여 비분할 적립금은 후순위자본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sup>40)</sup>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에서는 비조합원 협동조합 거래 시 협동조합은 거래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제1.5조제3항), 비조합원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비분할 적립금에 포함된다(「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제1.5조제3항).

이때, 법정적립금<sup>41)</sup>과 협동조합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적립금은 협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도 비분할 적립금으로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제3.4조(3)).

40) 서진선/최우석, 앞의 논문, 867면.

41)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은 본래 경영 안정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제도이다(변철환, 협동조합법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36면).

그리고, 스페인 「협동조합법」에서는 비영리협동조합의 경우에 협동조합 서비스의 통합 및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정관에 따라 비분할 적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제5항). 또한, 「협동조합법」에서는 의무적립금 외 교육 훈련기금을 비분할 적립금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의 「협동조합법」에서도 동일하다.

프랑스는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에서 비분할 적립금을 규정하고 있다(「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제3호). 그리고 프랑스의 「농어업법전」 5편(Livre V du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과 관련하여 법정 준비금으로 출자금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법전 R524-21 제1항), 법정준비금 이외의 적립금도 적립할 수도 있다(「농어업법전」 R524-21 제1항).

이때, 일정 요구 조건 하에 출자에 통합된 것(「농어업법전」 L523-1), 출자 재평가를 위해 이용된 준비금(「농어업법전」 L523-7)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존속 중에는 분할되지 않는다(「농어업법전」 R524-21 제2항).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비상호적 협동조합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50명 이하일 경우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환 시 보유하는 비분할 적립금은 상호기금에 귀속되고, 법인세가 면제된다(「판돌피 법」(Pandolfi Law)(904/1977 법률) 제12조).<sup>42)</sup>

다만, 이탈리아 「민법」에서는 비분할 적립금은 손실 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2545조의3).

---

42) 박광동/김형미/Hirota Yasuyuki/강봉준/신창섭/홍고우니/홍성민, 앞의 보고서, 135면.

## 제4장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

- I . 법제 도입 방안의 방향성
- II . 「협동조합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 III .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 IV .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 V .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 제4장

# 협동조합 자본 조달의 방향성

## I. 법제 도입 방안의 방향성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점차 회사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즉,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경제조직과의 경쟁을 위하여 회사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고,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협동조합과 회사가 명확히 구별되는 법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sup>4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 협동조합은 회사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ICA에서 7가지 협동조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ICA에서는 ①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②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④자율과 독립, ⑤교육, 훈련, 정보 제공, ⑥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⑦커뮤니티 관여가 협동조합의 본질이며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sup>44)</sup>

43) 박광동/김형미/Hirota Yasuyuki/강봉준/신창섭/홍고우니/홍성민, 앞의 보고서, 55면.

44) 한국협동조합협의회,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한국협동조합협의회, 2017, 1-2면.

[표 18] ICA 협동조합 원칙<sup>45)</sup>

원칙	주요 내용
1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li> </ul>
2 원칙 :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li> <li>○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함</li> <li>○ 단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다른 연합 단체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li> </ul>
3 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전달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li> <li>○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 자산으로 함</li> <li>○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은 제한된 배당만을 받음</li> <li>○ 조합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잉여금을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 일부는 분할할 수 없는 준비금 적립을 통해,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li> <li>- 협동조합 이용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li> <li>- 조합원이 승인한 여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li> </ul> </li> </ul>
4 원칙 : 자율과 독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이 통제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li> <li>○ 정부를 포함한 다른 조직과 협약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 함.</li> </ul>
5 원칙 : 교육, 훈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선출직 대표, 경영자 그리고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제공</li> <li>○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주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해 정보 제공</li> </ul>
6 원칙 :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 강화</li> </ul>

45)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앞의 글, 1-2면.

원칙	주요 내용
7 원칙 : 커뮤니티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li> </ul>

그리고, 최근 ICA에서는 2020-2030년 전략계획인 “협동조합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사람 중심 계획(A People-cent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을 발표하였다.

[표19] ICA 2020-2030년 전략계획<sup>46)</sup>

전략계획과 ICA 목적과의 관계	전략적 목적	이에 따른 전략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정체성 추진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 추진 · 응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의 인식재고</li> <li>-기관들의 지원</li> <li>-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ICA성명 강화</li> <li>-협동조합의 정체성 지키는 규제 추진</li> <li>-정체성과 관련된 소통 및 브랜딩 추진</li> <li>-협동조합 교육 추진</li> <li>-국제적인 정책의제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추진</li> <li>-협동조합 정체성에 근거한 ISO인증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운동의 성장 <b>-상호부조와 민주주의에 근거한 세계 협동조합 운동 추진</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조합운동의 강화</li> <li>-성장의 정의</li> <li>-혁신 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A회원의 확대와 관여 추진</li> <li>-ICA조직 간 코디네이션 강화</li> <li>-국제적 파트너십과 제휴 확대 · 심화</li> <li>-협동조합운동의 정책적 영향력 강화</li> <li>-협동조합운동에 관한 글로벌 지식 발전</li> <li>-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심화</li> <li><b>-협동조합 간 협동조합 자본 구축</b></li> <li>-협동조합운동의 소통 역량 심화</li> <li>-청년 참여 심화</li> <li>-성평등 추진</li> </ul>

46) 이주희, ICA 2020-2030년 전략 발표, 생협평론 2020가을 40, 2020, 175면.

전략계획과 ICA 목적과의 관계	전략적 목적	이에 따른 전략 이ни셔티브
○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회원조직 간에 경제적 및 기타 상호 유익한 관계 발전 촉진	-공동의 관심을 확인 -데이터 -규모의 경제	-지식 구축 교환 -대규모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그룹의 공동 행동 심화 -중소협동조합(SMEs)에 대한 더 큰 지원 장려
○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공헌 -지속가능한 인간 발 전을 추진하고 사람들 의 경제적·사회적 발 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 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공헌	-모니터링 -보고 -발전 추진	-협동조합의 SDGs공헌을 위한 지표 특정 -SDGs에 대한 협동조합 공헌 보고 -SDGs에 대한 애드보커시 전개 -국제개발협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이니 셔티브 심화

ICA 협동조합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의 본질을 추구하는 ICA 2020-2030년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발표에서도 협동조합 운동의 성장 중 상호부조와 민주주의에 근거한 세계 협동조합 운동 추진을 강조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자본전달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을 위한 기준으로는 ICA 협동조합 7가지 원칙 중 3원칙인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를 기준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본질에 맞는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본전달 방식 구축으로 협동조합의 규모화에 기여할 것이다.

## II. 「협동조합법」상의 우선출자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우선출자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 2)에 대하여 개별 협동조합법 중 「농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협동조합 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우선출자 규정은 비슷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표20] 우선출자 규정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법체계 비교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제8조의3(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제8조의4(우선출자의 청약)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제8조의5(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8조의6(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8조의7(증서의 형식)	제27조(증권의 형식)
제8조의8(증서의 기재사항)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8조의10(우선출자자의 책임)	제30조의2(우선출자자의 책임)
제8조의11(우선출자의 양도)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제8조의12(우선출자자 총회)	제30조의4(우선출자자 총회)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제31조(통지와 최고)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과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제1항에서 우선출자 발행목적과 관련하여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한다)에 경영공시를 하고, 부채총액을 자기 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인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이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 제1항).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에서는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과 납입출자금 총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제2항에서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전 회계연도 자본금의 50% 이하로 규정한 것과 유사하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균형상 현행과 같이 자기자본과 납입출자금 총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안정화 된다면 우선출자의 총액을 프랑스와 같이 상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과 비교하였을 때,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항이 더 규정되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9호). 이는 우선출자청약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반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중앙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고 하여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우선출자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1과 달리 증권의 첨유자에 대한 적법한 소지인으로의 추정이나(「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11제3항),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거나(「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11제4항),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11제5항).

이러한 증권 첨유자에 대한 적법한 소지인 추정 규정이나, 제3자 대항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둔다면 우선출자 양도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의 법적 안정성이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에 의하면 매입 한도의 경우,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이 우선출자 총액의 30%를 넘을 수 없는 반면에, 외부투자자의 매입 한도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외부투자자 1인이 우선출자 전체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이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본연의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7) 서진선, 앞의 글, 6면.

### III. 협동조합법상의 금융 관련 제도

#### 1. 금 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 금융 및 보험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 관련 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하여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경제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였다.<sup>48)</sup>

그런데,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 ·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한계는 있으나, 2018년 정부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 현재 사회적 가치연대기금이 설립 ·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 · 지역 금융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2020년 3월에 국내 사회적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21개 기관이 ‘사회적 금융 포럼 준비모임’에서 사회적경제의 내실화 · 규모화 · 지역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의 공급체계 완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전용기금 조성,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뒷받침 제공, SIB(사회성과 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s) 등 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본공급 방식에 대한 시행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sup>49)</sup>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도 예컨대, 독일 및 프랑스의 금융협동조합(협동조합은행),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의 경우에도 대출 및 기타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활용하여 자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금융업 및 보험업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개별 협동조합과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앞에서 본

---

48) 석영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18.11, 87면.

49) 송소연, 사회적금융포럼, 제21대 총선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제시, LIFE IN, 2020.10.1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036>) (방문일: 2020.10.15.)

바와 같이 개별 협동조합법에서는 신용사업에 대해 허용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허용하지 않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인정(제 94조)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다른 경제조직과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다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의 도입 유형으로는 ① 협동조합연합회에서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은행 또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② 기존의 금융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 ③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 지원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구상할 수 있다.<sup>50)</sup>

그러나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금융업을 수행할 정도의 기반조성이나 제도적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금융업을 직접 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종전의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중 금융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가치 연대 기금처럼 사회적 경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타당하다.

## 2. 기금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자본전달 방식으로는 출자금, 적립금, 정책자금(경기도 사회적 경제 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 신용보증기금의 상품으로 기존 보유부동산의 담보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자본 전달 등), 사회연대 금융(한국 사회 가치연대 기금과 재단법인 밴드 등) 등이 있다.<sup>51)</sup>

---

50) 김나라, 앞의 글, 21면.

51) 서진선, 앞의 글, 9면.

다만,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기금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탈리아 「민법」에서는 상호 부조 기금(mutual funds) (제2545조의4)을, 스페인 및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상에서는 교육 홍보기금 또는 교육 훈련기금, 프랑스에서는 협동조합발전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개별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간의 연대를 통한 기금의 형성 및 운영에 기인한 것이다.<sup>52)</sup>

그리고, ICA 협동조합 원칙 중 5 원칙 : 교육, 훈련, 정보 제공과의 부합성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ICA 2020~2030년 전략인 “두 번째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길”에서도 협동조합 정체성 추진과 관련하여 전략적 목적으로서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 인식 제고 및 기관들의 지원, 교육을 제시 등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홍보 또는 교육 훈련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기금 또는 교육 훈련기금에 대해 의무규정을 두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표21] 유럽 주요국의 교육·훈련기금 적립 관련 규정

국가	주요 내용
스페인	교육홍보기금(비분할 적립금)
포르투갈	교육훈련기금
이탈리아	상호부조기금(비분할 적립금)
프랑스	협동조합발전기금

52) 서진선,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5, 14면.

## IV. 협동조합법상의 공제제도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상으로는 공제제도는 협동조합 연합회 등만이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제4편에서 상호공제 및 공제조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공제사업=보험업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4항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의2제6항, 제115조), 이에 대한 훈령이나 고시가 없음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V. 협동조합법상의 비분할 적립금 제도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중 일반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비분할 적립금 제도에 관한 규정은 없고, 법정적립금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3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적립금은 반드시 비분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하는 경우인 임의적립금에서도(「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3항) 비분할 적립금으로 할지, 분할 적립금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이 경우에 비조합원 거래나 회사 지분 또는 다른 자산의 소유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분할적립금 또는 비분할 적립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ICA 협동조합 원칙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와 관련한 사항인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 자산으로 하면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최소한 부분만 비분할 적립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 거래나 회사 지분 또는 다른 자산의 소유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전부가 아닌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비분할 적립금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ICA 협동조합 원칙 중 5원칙과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스페인의 「협동조합법」과 같이 교육 홍보기금 또는 교육 훈련기금에 대해서는 비분할 적립금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중 COOP 2.0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중 교육 및 홍보 내실화를 제시하고 있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중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교육 홍보기금 또는 교육 훈련기금에 대한 비분할 적립금의 법제화는 필요하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5장

### 결 론



## 제5장

## 결 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아직은 성장기에 있는 단계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이 점차 회사화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 법상의 협동조합이 일반 회사 등과는 달리 공익(共益)과 공익(公益)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직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본질에 맞는 자본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는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전략 중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금융 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본질에 맞는 자본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ICA 협동조합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중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A 2020-2030년 전략계획에서도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 자본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은 협동조합의 본질에 맞는 자본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본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전달 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우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자본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은 출자금이다. 다만, 출자금만을 자본전달체계로 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출자금 이외에 다양한 자본 조달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자본 조달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자본전달체계로는 우선출자제도, 금융업(보험업 포함) 도입, 기금제도 도입, 공제제도 도입, 비분할적립금제도 도입 등이 있다.

우선 우선출자제도는 「유럽협동조합법」,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법」, 프랑스의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0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으로 우선출자제도가 도입되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등과 같은 개별 협동조합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출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선출자제도에 대해서 증권 첨유자에 대한 적법한 소지인 추정 규정,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명문화, 외부투자자에 대한 매입한도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자본전달체계 중에 금융업(보험업 포함)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프랑스의 협동조합은행, 포르투갈의 협동조합채권의 발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의 금융은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인정하고 있다(제94조). 그리고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에서 신용사업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금융업을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기존 개별협동조합 법상의 협동조합 중 금융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기금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대한 기금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이탈리아 「민법」, 스페인 및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프랑스 「협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률」등에서 협동조합의 기금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차이가 발생하나,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대한 기금은 비분할 적립금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기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률 중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기금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할 점은 우선적으로 교육 홍보기금 또는 교육 훈련기금에 대해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비분할 적립금으로 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는 이탈리아와 동일하게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훈령이나 고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대한 비분할 적립금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ICA 협동조합 원칙,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스페인·포르투갈 「협동조합법」,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이탈리아 「민법」등에서 비분할 적립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대한 엄격한 의미의 비분할 적립금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단기적·최소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기금 또는 교육 훈련기금에 대한 비분할 적립금의 법제화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I. 국내외 문헌

- 김나라, 협동조합 금융지원 해외사례 연구, IBK기업은행/IBK경제연구소, 2017.
- 박광동/김형미/Hirota Yasuyuki/강봉준/신창섭/홍고우니/홍성민,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 박창균/ 이건범/ 민세진,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 채권연구원, 2012.
- 변철환, 협동조합법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서진선, 협동조합 자본조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0.
- 서진선,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아이쿱 협동조합연구소, 2015.
- 통계청,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 통계청, 2019.12.
- 한국협동조합협의회,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한국협동조합협의회, 2017.
- 한정미/이준서/김현희/김명아/김정현,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해외법제조사 및 분석 연구, 기획재정부, 2012.
- 석영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18.11.
- 이주희, ICA 2020-2030년 전략 발표, 생협평론 2020가을 40, 2020.
- 정숙희, 직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서진선/최우석, “협동조합 출자금과 비분할 적립금의 자기자본-부채 분류: 협동조합 관련 법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3권 제5호, 대한경영학회, 2020.5.

정순문,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쟁점”, 모심과 살림 제15호, 모심과 살림 연구소, 2020.9.

정순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공익과 인권 제19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대학교 인권법학회, 2019,

정순문, 협동조합의 법인 성격 규명 및 제도개선 과제, “협동조합 기본법 2.0시대를 준비하자(발표자: 김기태)” 토론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2018.8.24.

農林中金総合研究所, 世界の協同組合組織の発展事例に係る調査委託事業報告書, 農林中金総合研究所, 2018.

Carlo Borzaga, SOCIAL ENTERPRISES AND THEIR ECOSYSTEMS IN EUROPE, Country report ITALY, European Commission, 2020.

## II. 인터넷 자료(신문 등)

기획재정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2020.3.31.

기획재정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3.31.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관계부처 합동, 2020.3.31.

박찬준, 협동조합·주식회사 M&A 길 열린다, 세계일보 2013.12.29.(<http://www.sgye.com/newsView/20131229002753?OutUrl=naver>(방문일: 2020.8.17.))

박준모, 자본 조달 다양화, 협동조합 안정적 경영 위한 필요 조건, 어업수산, 2019.5.2  
2.(방문일: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94>(2020.10.15.))

송소연, 사회적금융포럼, 제21대 총선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제시, LIFE IN, 2020.1  
0.1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0036>)  
(방문일: 2020.10.15.)

### III. 참고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 개정이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169&lsId=&efYd=202010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방문일: 202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 기본법」,(<http://www.law.go.kr/lsSc.do?tabMenuId=ab18&query=%ED%98%91%EB%8F%99%EC%A1%B0%ED%95%A9%20%E%A%B8%B0%EB%B3%B8%EB%B2%95#undefined>)(방문일: 2020.8.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597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O8J1L0Q1K5L1M0U1K6J0G9E3I2E0](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O8J1L0Q1K5L1M0U1K6J0G9E3I2E0))(검색일: 2020.8.17.)

Laboral Kutxa Corprative([https://corporativa.laboralkutxa.com/historia/?\\_ga=2.122322889.375315646.1598052506-813514708.1598052506](https://corporativa.laboralkutxa.com/historia/?_ga=2.122322889.375315646.1598052506-813514708.1598052506)(방문일: 2020.10.14.))

Ley 10/2003, de 13 de junio, de Mutualidades de Previsión Social de Cataluña.

Ley 7/2000, de 29 de mayo, de Mutualidades de Previsión Social de la Comunidad Valenciana.

Ley 9/2000, de 30 de junio, de Mutualidades de Previsión Social de la Comunidad de Madrid.

Ley 5/2012, de 23 de febrero, sobre Entidades de Previsión Social Voluntaria



현안분석 20-07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 관련  
법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20년 10월 28일 인쇄  
2020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계홍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5,5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9-11-90802-49-9 93360





## 박 광 동(책임)

### 학력

건국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실적 및 논문

-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법제 모형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 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 791190 802499

ISBN 979-11-90802-49-9



9 3360

ISBN 979-11-90802-49-9

₩ 5,500원